

편집위원회 운영 내규

『철학』 발행 규정

1. 원고 접수 : 연중 수시
2. 발간 : 연 4회 (봄호 2월 28일, 여름호 5월 31일, 가을호 8월 31일, 겨울호 11월 30일자)

『철학』 투고 규정

1. 원고 종류
 - 1) 철학에 관한 전문적인 학술논문
 - 2) 서평 : 최근 3년 이내에 출판된 철학 관련 학술 저서(또는 번역서)에 대한 비판적 서평 (단순한 도서 소개는 게재불가)
 - 3) 논문평 : 최근 3년 이내에 발표된 국내외 주요 연구 성과, 특히 『철학』에 수록된 논문 및 국내 주요 연구 동향에 대한 논쟁적 언급 (논문과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치며 「토론」으로 분류하여 게재)
2. 분량
 - 1) 논문 : 본문, 각주, 참고 문헌, 요약문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기준 140매 이내. 이 분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심사를 유보하고 분량 축소를 요구할 수 있다. (흔글 프로그램의 ‘파일→문서정보→문서통계’에 나오는 원고지 분량 참고)
 - 2) 서평 : 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 3) 논문평 :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3. 투고 요령
 - 1) 논문투고는 Jams에서 한다. (주소: <https://philosophy.jams.or.kr/>)
 - 2) 논문투고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Jams 시스템 상에서 <논문게재 요청서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작성하여 업로드 해야 한다.
- Jams 시스템 상에서 <KCI 논문유사도검사 결과 확인서>를 업로드해야 한다.
- Jams 시스템 상에서 <연구윤리 준수> 서약을 해야 한다.
- 최종논문에 대한 교정, 교열의 책임은 전적으로 저자에게 있다.

4. 투고자격 : 최근 2년간 연회비를 미납하지 않은 한국철학회원

5. 심사료 : 투고자는 논문 투고와 함께 30,000원의 심사료(편당 심사료의 50%에 해당)를 한국철학회 사무국에 납부해야 한다.

6. 게재료 : 심사에서 최종적으로 게재가능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아래와 같이 게재료를 한국철학회 사무국에 납부해야 한다. (서평, 논문평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 1) 전임교원 : 『철학』지의 게재 면수를 기준으로 면당 5,000원 (25면 초과시: 초과 면당 10,000원) * 여기서 ‘전임교원’은 사학연금 또는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대학교원임.
- 2) 전임교원 이외의 회원 : 게재료 면제 (25면 초과시: 초과 면당 5,000원)
- 3) 연구비 수혜 논문 : 편당 400,000원 (“…… 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 결과물임”이 표시된 논문)

7. 원고 작성 시 유의 사항 : 투고 논문에서는 반드시 아래의 사항들이 준수되어야 하며, 이에 어긋나는 표기법을 사용한 원고는 수정 절차를 거친 후 접수된다.

- 1) 편집의 일관성을 위하여 장, 절, 항, 목을 1, 2), (3), ④로 표시한다.
- 2) 강조는 ‘ ’ 부호나 고딕체로 표기하고, 인용문에서 가운데 단어나 구절의 일부 생략은 ‘……’ 로, 완전한 문장의 생략은 ‘(……)’ 로 표

기한다.

- 3) 투고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이나 “필자, 줄저, 줄고”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예: ‘필자’ → ‘홍길동’)
- 4) 각주에서 인용할 때에는 저자 성명, 출판연도, 쪽수만을 표기하고, 자세한 서지사항은 참고문헌목록에서 밝힌다. 단, 외국인의 경우에는 姓(surname)만 표기하되 성씨가 같은 사람들의 문헌이 모두 인용될 경우에는 성명(full name)을 표기한다. 따라서 ‘같은 책’, ‘위의 책’, ‘Ibid.’ 같은 표기방법은 사용하지 않는다. 여러 권의 저서나 논문을 함께 표기할 때에는 단락을 나누지 말고 이어서 쓰면서 세미콜론(;)으로 연결한다.

[각주 예시]

- 국문: 김재권 (2007), p. 35.
 - 영문: Kim (1998), p. 78.
 - 영문: Fred Feldman (2005a), p. 134; Richard Feldman (2009), p. 59.
- 5)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 참고문헌목록을 기재하되 본문에서 언급(인용·참조)된 문헌만을 수록한다. 참고문헌목록 작성법은 다음과 같다.
 - ① 국한문 문헌 다음에 외국 문헌이 오도록 배열하고, 국한문 문헌은 저자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외국 문헌은 저자 성명의 알파벳 순으로 배열한다.
 - ② 저서와 논문의 제목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저서 제목 : 동양서-『 』 부호로 표시, 서양서-이탤릭체로 표시
 - 논문 제목 : 동양어 논문-「 」 부호로 표시, 서양어 논문-“ ” 부호로 표시
 - ③ 참고문헌목록에서 동일 필자가 동일 연도에 두 편 이상 출판한 문헌을 기재할 경우에는 연도 다음에 a, b, c…로 나누어 표기한다.
 - ④ 기타 사항은 아래 예시를 따른다.
 - 국문논문 (학술지 게재)
최재희. 1979. 「선형적 구상력의 근원적 특성」. 『철학』 13집: 3-41.
 - 국문저서

- 한전숙. 1996. 『현상학』. 서울: 민음사.
- 국문저서 (공저)

신일철 외. 1992. 『현대철학과 사회』. 서울: 서광사.
 - 국문번역서

아리스토텔레스. 2001. 『니코마코스 윤리학』, 최명관 옮김. 서울: 서광사.
 - 국문논문집

한국분석철학회. 1993. 『실재론과 관념론』. 서울: 철학과현실사.
 - 논문집에 수록된 국문논문

김재권. 1993. 「최근 철학의 칸트적 경향」. 한국분석철학회(1993), pp. 9-28.
 - 동양서

梁啓超. 1982. 「陰陽五行說之來歷」. 顧吉剛 編著. 「古事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 서양논문 (학술지 게재)

Quine, W. V. O. 1950a. "On Natural Deduction." *Journal of Symbolic Logic* 15: 93-102.

Quine, W. V. O. 1950b. "Identity, Ostension, and Hypostasis." *Journal of Philosophy* 47: 621-633.
 - 서양저서

Rorty, Richard. 1979. *Philosophy and the Mirror of Natur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서양번역서

Kant, Immanuel. 1999. *Critique of Pure Reason*. Trans. by Paul Guyer and Allen W. Woo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서양논문집

Hahn, Lewis E., ed. 1999. *The Philosophy of Donald Davidson*. Chicago: Open Court.

- 논문집에 수록된 서양논문

Nagel, Thomas. 1999. "Davidson's New *Cogito*." In Hahn(1999), pp. 195-206.

- 최초 출판연도를 병기할 경우

Locke, John. (1690) 1975.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P. H. Nidditch,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기타 양식은 위의 예시를 참조하여 일반 관례에 따른다.)

8. 논문 요약문 작성 요령

- 1) 요약문 구성 : 요약문 본문, 논문의 주제 분류, 주요어(또는 검색어)로 구성
- 2) 분량 : 500자 내외
- 3) 주제 분류 : 동양철학의 경우에는 한국철학, 중국철학, 인도철학 등의 지역별 분류, 시대별 분류, 분야(학파)별 분류 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서양철학의 경우에는 형이상학, 인식론, 윤리학, 논리학, 현상학 등의 분야별 분류, 서양고대, 중세, 근대, 현대유럽, 현대영미 등의 시대별 분류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분류 주제는 세 가지 이내로 한다.
- 4) 주요어(또는 검색어) : 논문의 주요 개념, 주제, 인물들을 언급하되 5개 내외로 한다.

9. 연회비, 심사료, 게재료 송금 계좌 : 농협 079-17-000545(한국철학회)

『철학』 논문심사 규정

1. 접수된 투고논문은 심사위원이 선정되는 즉시 심사에 회부되고, 게재 여부는 최종 심사결과가 나오는 즉시 투고자에게 통보된다. 심사 대상은 발행일의 전월 15일(1월 15일, 4월 15일, 7월 15일, 10월 15일)까지 접수된 논문으로 제한한다.

2. 논문이 심사에 회부되기 전 투고자는 익명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편집위원회에서 선정된 익명의 해당 분야 심사위원 3인이 투고논문을 심사한다. (심사위원 명단과 심사보고서는 항구적으로 대외비 및 인비로 처리된다.)

3. 심사위원은 소정의 심사기준(학술논문으로서의 형식적 요건, 창의성, 논리성, 명료성, 완결성, 선행연구 반영도, 관련 문헌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도 등)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심사보고서로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4. 편집위원은 투고논문을 직접 심사하지 않고 심사위원 추천업무만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최종적으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이 다시 투고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이를 접수하지 않는다. (단, 투고자가 본 학회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참조하여 수정한 원고를 타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은 무방하다.)

6. 투고 논문은 한국철학회 연구윤리 시행세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연구부정행위가 없어야 한다.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중복게재·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 자료나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부당한 중복게재”란 연구비의 중복수혜, 연구결과의 중복계산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 이전에 출판된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사실을 밝히지 않고 중복 게재 내지 이중 출판하는 경우를 말한다.
-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7)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8)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7. 논문 게재 순서는 동양철학→서양철학 순으로, 고대철학→현대철학 순으로 하되 세부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정한다.

8. 투고자의 인적사항(소속, 직위) 표기 방식은 다음과 같다.

- 1) 투고자가 철학과 전임교원일 경우: 대학명과 직위 명기
예: 홍길동 (○○대 교수)
- 2) 투고자가 타 학과 전임교원일 경우: 대학명과 학과명 및 직위 명기
예: 홍길동 (○○대 윤리교육과 교수)
- 3) 투고자가 비전임교원일 경우: 대학명과 직위 명기

예: 홍길동 (○○대 연구교수), 홍길동 (○○대 강사)

4) 투고자가 대학원생일 경우: 대학명과 과정 명기

예: 홍길동 (○○대 박사과정)

9.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에 따른 최종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심사위원별 심사결과에 따른 게재여부 판정기준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최종 판정	비고
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2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가	
3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가	
4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약식심사	*
5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6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7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약식심사	*
8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9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10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 약식심사 : 기존 심사위원 가운데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에게 수정된 논문의 재심사를 의뢰한 후 게재 여부를 판정해서 추후 게재하는 것을 의미함.

10. 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갖추어 편집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수용 여부 및 조치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11. 심사료는 2만원, 약식심사일 경우 심사료는 1만원으로 한다. 심사료는 거부할 수 있다.